인권정보자료실
Ma1.18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 민간 포럼
International NGO Forum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주제: "세계화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와 연대방안"
Theme: "International Networking & Solidarity
For the Labor Security of Migrant Workers Amidst Globalization"

기 간 2001년 12월 12일~14일 (12~14, December, 2001)

장 소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Korean Church Centennial Memorial Building in Seoul, Korea

주 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4층
Tel)02-312-3317~9 Fax)02-313-0261
E-mail)cisjd@chollian.net http://www.jpic.org

International NGO Forum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인권정보자료실
Ma1.18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 민간 포럼
International NGO Forum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주제: "세계화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와 연대방안"

Theme: "International Networking & Solidarity For the Labor Security of Migrant Workers Amidst Globalization"

기 간: 2001년 12월 12일- 14일 **12~14, December, 2001**

장 소: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Korean Church Centennial Memorial Building in Seoul, Korea

주 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주 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CISJD, Ansan Migrant Workers Center, Kwangju Migrant Workers Center

국제민간포럼개최 자료집을 발간하며

현재 전 세계 60억 인구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대략 1억5천 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국과 고향을 떠나 낯선•땅에서, 타당한 대우나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우리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약 3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사회의 구성원 중 가장 소외된 자로 인권을 유린당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본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하며 지원하는 국내단체들의 수가 150여 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희생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서로간의 실질적인 정보교환이나 연대방안 없이 외롭게 투쟁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금년에는 유엔이 제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12월 8일)을 맞이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을 개최하기로 추진한 것입니다.

금번 국제포럼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역량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별 · 국가별 · 국제적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모색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활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포럼의 준비과정부터 계속 참여해온 각 종단들(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에 소속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간에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범종교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각, 방향, 사업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들을 분열시켜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성숙한 삶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삶과 믿음,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이 무엇보다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이번 포럼의 준비과정부터 참여로 협조해주시고 조언해주신 설동훈 교수님과 그밖에 여러 준비과정에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시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멀리 외국에서 이 포럼의 주제강연과 각국의 현황 발표를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며 애쓴 본 연구원의 김경미 선생과 이미화 선생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1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성 해 용 목사

Preface

Today, it is said that the migrant workers population are about one hundred and fifty millions in the midst of six billions of the whole world population. They left their home and country and live in a strange land without adequate treatments and rights in our society, being excluded from human rights. It has been reported that approximately there are thirty thousand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nd the increasing number is anticipated. Like the migrant worker in other countries, those who work in Korea as the migrant workers are considered the most exclusive class or worse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being exploited and living in a dehumanize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the CISJD last year, there are about or more than 150 regimental support groups in Korea. And those who work for these groups are working in a poor conditions sacrificially all by themselves without any unity or communicating each other with other groups effectively for exchanging informations they needed. Seeing this cases, CISJD has planned to hold this International NGO Forum for the migrant workers along with the UN-designated World Migrant Workers Day that was 18th of December.

We hope this Forum could make a room for bonding each other among the support groups and many organiz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serve to establish a better policy and support for the migrant workers through producing a practical device of networking for the migrant worker organizations in Korea and the world.

We have been grateful for working together with the various religious organizations - Buddhist, Won-Buddhism, Islamic, Catholic, and Protestant - from the preparing steps for this Forum. We hope that there will be continuing efforts among different religious groups to establish an effective network for the migrant workers beyond their religious faith. We all can have a different ideas about our faith, concerns, future, and plans.

These variations should work for a harmonious and fluent human lives, not for weakening us as parting each other. We believe that living together cooperatively leads us to be mature, and it will make us prosper richly and be happy. First of all, we hope this Forum gives a new horizon to all who want to live cooperatively with the foreign migrant workers.

I want to say thanks here to professor Seol, Dong-Hoon's a lot of helps from the beginning of preparations, all foreign countries speakers and participants who helped preparing for this Forum, and both Ms. Kim, Kyung-Mee and Lee, Mi-Hwa's efforts to prepare for this forum.

December 12, 2001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Director Rev. Song, Hae-Yong

〈 목 차 〉

프로그램 1

PROPOSED PROGRAMME 4

개회식 Opening Ceremony 7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권확보를 위한 방안과 연대 8

MIGRANT WORKERS RIGHTS TO LABOR SECURITY 19

한국내 이주노동자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과 전망 34

Movement and perspective of improving migrant related system in Korea 38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 40

Discrimination and the Problems facing Female Migrant Laborers in Korea : 46

외국인노동자 의료서비스 지원 현황 및 향상을 위한 제언 48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운동의 배경과 의의 51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UN Migrant Convention Ratification Campaign 55

이주노동자 창업협동조합 운동의 과제 58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과 전망 71

The policy and vision for organizing migrant workers 74

외국인노동자지원을 위한 각 종교단체의 활동과 연대방안 77

한국내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82

Reality and Prospects for the National Network Movement 91

가나가와 시티유니온 제일외국인노동자의 노동상담 활동과 조직화 보고 96

Kanagawa City Union 104

대만의 이주노동자의 현실 113

TAIWAN COUNTRY REPORT 121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131

MIGRANT WORKERS IN MALAYSIA 138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146

The Labor Policy for Foreign Workers and Their Rights to Work 159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국제네트워크와 연대 및 활성화 방안 174

Networking and Building Strength Address Strategic Needs of Migrant Workers 181

토론문 : 이주노동자와 지원 NGO들의 연대를 위한 제언 191
토론문 2 193
Discussion 2 197

참고자료 198
기독교장로회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199
총회(합동) 외선협 회원 명단 199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 203
국내에서 세계선교를 하고 있는 감리교 외국인근로자선교협의회 204
KMCMAMW for the World Mission in Korea 211
가톨릭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219
불교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소개 227
Buddhism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Culture Center 231
불교 (사)좋은벗들 232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235
Report on the Activity for the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by Won Buddhism Seoul Foreigners' Center (WSFC) 238
재단 법인 한국 이슬람교 광주 이슬람 성원 244
Kwang Ju Masjid 247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 민간 포럼

주제: "세계화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와 연대방안"

포럼의 배경과 취지

오늘날 세계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불가피한 현실로서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60억 인구 중 대략 1억5천여 명이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조국과 고향을 떠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로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갈수록 이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타당한 대우나 정당한 권리를 얻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원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을 맞이하여, 세계화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과 권리 및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을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고자 한다.

이번 민간포럼은 **"세계화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권 확보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와 연대방안"**이란 주제로,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애써온 국내외 단체들의 활동과 연대 및 네트워크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로써 이주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과 전략 및 연대활동이 국내뿐만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주로 외국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제 네트워크의 추진을 통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포럼을 통한 목표

1) 각국의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한 정책과 활동의 비교연구 및 분석작업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및 그밖에 이주노동자수입국을 중심으로

2)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운동 및 대안모색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악화된 고용불안 및 노동권 침해문제에 대한 대응전략과 행동방안 공유, 대안적 연대방안 모색

4)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역량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별/국가별/국제적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프로그램

첫째날(12 월 12 일)

〈오후〉

1:00-2:00 등록

2:00-3:00 개회식

3:00-4:00 주제강연: "세계화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권확보를 위한 방안과 연대"
May-an C. Villalba (현 필리핀UNLAD Kabayan Foundation 소장, ILO 국제이주노동자문제위원회 위원, 전 아시아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사 회: 최서연 교무(원불교 서울외국인센타 소장)

4:00-6:30 국내 NGO의 주요 부문활동에 대한 현황 및 과제
사회: 정순옥 수녀(천주교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1)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과 전망 / 이란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
2)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과 정책 /
이금연 (안양전진진상복지관 관장, 이주·여성인권연대)
3) 의료서비스지원 향상 프로그램 / 구정회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기획관리팀장)
4) 국제조약비준을 위한 활동 / 김미선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사무국장)
5) 귀환이주노동자지원을 위한 활동과 전망 / 박천웅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
6) 공동체 및 노조지원을 위한 정책과 전망 / 임미령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위원장)
7) 이주노동자지원을 위한 각 종교단체의 활동과 연대방안 /
진방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부 간사)

6:30-7:30 저녁식사

7:30-8:10 발제: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연대와 국내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방안"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사회: 정진우 (불교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타 사무국장)

8:10-9:00 질의응답 및 토론

둘째날(12 월 13 일)

〈오전〉
10:00-12:30 각국보고-"정부의 정책, NGO의 주요활동과 현황 및 전망,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연대와 네트워크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사 회: 전구왕 (이슬람 광주성원 총무부장)

한국 / 이정호 신부(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직전회장)
일본 / Satoshi Murayama(Director of the Kanagawa City Union)
대만 / Fr. Peter O'neil(Director of the Columban Hope Wokers' Center)
말레시아 / Glorene Dass(Tenaganita)

〈오후〉

12:30-1:30 점심식사
1:30-2:20 발제: "각국 이주노동자의 정책과 노동권"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정치사회학부)
사회: 김두한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총무)

2:20-2:50 발제:"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국제네트워크와 연대 및 활성화 방안"
Maria Angela Villalba

2:50-3:20 토론: 박경태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최홍엽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3:20-3:50 휴식

3:50-5:30 종합토론

5:30-6:00 성명채택 및 발표

셋째날(12 월 14 일)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내단체 방문 - 서울외국인인노동자센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외국인노동자 샬롬의집, 천주교서울대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상: 외국 참가자)

International NGO Forum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me: "International Networking & Solidarity For the Labor Security of Migrant Workers Amidst Globalization"

Background & Purpose:

Today, nearly 150 million people out of the total world population of 6 billion, have left their countries and homelands to find jobs and to struggle for an adequate living, and this figure is growing every day.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however, have not improved much, although the matter of global migration is a hot and unavoidable issue. The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CISJD), therefore, will hold an International NGO Forum to mark the UN-designated International Migrants' Day in Korea, in order to work towards more developed policies and rights for migrant workers under the circumstanc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Under the theme "International Networking & Solidarity For the Labor Security of Migrant Workers Amidst Globalization", the Forum will focus on developing a plan for bo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networking, and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activities and movements relating to migrant worker issues.

Objectives:

1) Develop a common analysis and comparative study regarding the policies and activities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mong migrant-receiving countries, particularly Korea, Japan, Taiwan and Malaysia;

2) generate actions to improve and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igrant workers;

3) share strategies of resistance and programs of action in the face of the worsening problems of labor security under the circumstanc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4) search for an effective networking plan to strengthen NGOs' activities for migrant workers in the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arena.

PROPOSED PROGRAMME

FIRST DAY: December 12

1:00-2:00 pm Registration

2:00-3:00 pm Official public opening, Welcome address & remarks

3:00-4:00 pm Key-note lecture by Ms. Maria Angela Villalba :
(Executive Director of the Unlad-Kabayan Migrant Services Foundation
Executive Council Member of the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MRI)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n Migrant Cente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under the circumstanc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focusing on the right to labor security"
Moderator: Rev. Seo-yeon Choe (Won Buddhism Seoul Foreigners' Center / Director)

4:00-6:30 pm Presentations on key issues, by Korean NGOs :
Modrerator: Sr. Josephina Cheong(Chatholic Foreign Workers' Labor Counselling Office / Director)

1) Activities for changing policy and system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Ran-Joo Yi(Buchon Migrant Workers House/ Secretariate)
2) Activities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migrant workers; Kum-Yeon Lee(Annyang Migrant Workers Center/ Director,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3) Improvement of supporting programmes for medical treatment services; Chung-Hee Koo(Medical Mutual-Aid Union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Staff)
4) Activitie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treaty ratification; Mi-Sun Kim(Medical Mutual-Aid Union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Coordinator)
5) Programs for repatriating migrant workers; Rev. Chun-Ung Park(Ansan Migrant Workers Center/ Director)
6) Activities for supporting labor unions & various nationality-communities; Mi-Ryeong Yim (Equality Trade Union in Seoul Gyeonggi Incheon Region/ Chairperson)
7) Activities and plans for building solidarity among religious groups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Rev. Bang-Joo Jin(Mission Society for the Migrant Workers in the PCK/ General Secratary)

6:30-7:30 pm Dinner

7:30-8:10 pm Presentation by Seok-Woon Park
(Labor Human Rights Center / Director):
"National network plan for the interest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Moderator: Jinwoo Jung (Buddhism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Culture Center/ General Secratary)

8:10-9:00 pm Q&A and discussion

SECOND DAY: December 13

10:00am-12:30pm Country reports, focusing on government policy, NGO activities, reality and visions, and the plan of networking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Moderator: Jeon-Goo Wang(Islam Kwang Ju Masjid / Secretery General)

1) Korea / Jung-Ho Lee(Former President of the JCMK)
2) Japan / Satoshi Murayama(Director of Kanagawa City Union)
3) Taiwan / Fr. Peter O'Neil (Director of the Columban Hope Wokers' Center)
4) Malaysia / Glorene Dass (Tenaganita)

12:30-1:30 pm Lunch

1:30-2:20 pm Presentation by Dr. Dong-Hoon Seol(Chonbuk National Unv.):
"Policy and labor security for migrant workers in various countries"
Moderator: Pev. Pas. Doo-han Kim
(Korean Methodist Church Mission Association for Migrant Workers / Director)

2:20-2:50 pm Presentation by Ms. Maria Angela Villalba:
"International network plan for the interests of migrant workers"

2:50-3:20 pm Comment & Discussion by Dr. Kyung-Tae Park(SungKongHoe Univ.)
Dr. Hong-Yeup Choi(Chosun Univ.)

3:20-3:50 pm Tea break

3:50-5:30 pm Synthesis & final discussion

5:30-6:00 pm Adoption and announcement of Forum Statement

THIRD DAY: December 14

Foreign participants visit Korean NGOs for migrant workers in Seoul and Ansan

개회식 Opening Ceremony

사 회 Moderator	성해용 목사 (본원 원장) Rev. Hae-Yong Song (Director of the CISJD)
인 사 말 씀 Welcome Address	이계준 목사 (본원 이사장) Rev. Dr. Gae-Jun Lee (Chairperson of the CISJD)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이재정 의원 (본원 이사, 국회의원) Dr. Jae-Jung Lee (Board member of the CISJD, Lawmaker)
	오충일 목사 (노동일보 발행인) Rev. Choong-Il Oh (President of the Korean Labor Daily News)
	최의팔 목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Rev. Eui-Pal Choi (Chairperson of the JCMK)
	홍성현 목사 (예장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회장) Rev. Dr. Sung-Hyun Hong (Chairperson of the Mission Society for the Migrant Workers in the PCK)

한국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관한 총괄적인 보고

1. 한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현황

대한민국 법무부는 2001년 7월말 현재, 국내 이주노동자가 314,086명 체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문기술인력 7.4%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연수생이 22.4%인 70,581명이며, 이른바 '불법체류자'라 불리는 미등록 노동자가 220,162(산업기술연수생 이탈 48,026명)명으로 70%에 이른다.

2001년 7월 현재,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의하면 총 16만7천190명의 산업기술연수생이 입국해 3만4천62명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한다. 무려 20.4%가 합법적인 신분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70년대 이전까지 중동이나 독일 등지로 인력송출국이었던 한국이 80년대 말부터 소위 3D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부딪히자 제조업과 건설업, 수산업 등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한지 10여년만에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특징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력보다 이른바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력이 더 많고, 또 이들은 한국에 현재 22만 명이 존재하는 사실이다.

(단위: 명)

연도	전체	전문기술 인력	산업기술 연수생	미등록 노동자
1987년	6,409	2,192	0	4,217
1988년	7,410	2,403	0	5,007
1989년	14,610	2,474	0	12,136
1990년	21,235	2,833	0	18,402
1991년	45,449	2,973	599	41,877
1992년	73,868	3,395	4,945	65,528
1993년	66,323	3,767	8,048	54,508
1994년	77,546	5,265	24,050	48,231
1995년	142,405	8,228	52,311	81,866
1996년	210,494	13,420	68,020	129,054
1997년	245,399	15,900	81,451	148,048
1998년	157,689	11,143	47,009	99,537
1999년	217,384	12,592	69,454	135,338
2000년(7월)	258,866	15,441	77,527	165,898
2001년(7월)	314,086	23,343	70,581	220,162

자료 : 법무부(2000, 2001년 종합).

2,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기본입장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국내취업에 대하여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기술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되, 단순기능인력 수입은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8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되면서 국내 노동인력들의 3D 업종 기피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도 전통적인 저임금-노동집약적 산업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게 된다. 한편 1990년대 초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도 노동력 부족현상을 가속화했던 것이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서서히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거의 이른바 '불법체류자'들이었는데 1990년대 초반 비공식추산으로 이미 10만여 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전국 영세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국내 노동인력시장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있었다.

법제도 변천과정

1991년 10월 26일, 법무부 훈령 제255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에 대한 업무지침". 즉,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로 현지 고용인력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해외투자기업에서 현지 고용인력에 한해서 50명 한도, 6개월 이내로 허용되고, 추후 필요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했다.

정부는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시행한 4차례의 출국시한 연기조치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993년 11월 24일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조정협의회'를 열고, 1994년 1월 1일부터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간 2만 명 한도 내에서 산업기술연수생 명목으로 외국인력을 채용, 최장 2년까지 국내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별로 수행된 모집방식도 상공자원부가 지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 연수협력단이 외국인력의 선발과 채용, 공급,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993년 12월 28일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부 훈령 294호)>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에 의해 연수기간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가 보는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이며, 94년 5월에 네팔인 연수생 33명이 최초로 입국하게 된다.

1995년 1월 9일 참고 견디다 못해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이러한 사건과 NGO의 활동을 통한 사회의 관심은 결국 2월 14일 노동부 예규 제258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발표로 이어지게 된다. 지치은 의 내용은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최저임금제 적용 및 폭행금지 등 근로기준법 8개 조항의 적용을 포함 한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결과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대체로 네 가지 결과를 낳았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연수생 이탈율 증대, 미등록 노동자의 증대, 매년 반복되는 정부당국의 단속과 강제추방이 그것이다

이 속에 나타난 노동권 침해 (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구체적인 실태와 사례들은 작년 3월에 외노협이 발간한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와 금년 12월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백서>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생 인권침해사례가 감소하는 등 산업기술연수생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중기협의 입장과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위: 명, %)

구 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미등록근로자 수	48,231	81,866	129,054	148,048	99,537	135,338	148,358	220,162
연수생 이탈자 수	1,989	6,342	11,143	18,698	21,349	26,978	29,910	
미등록근로자 중 이탈자 비율	4.1	7.7	8.6	12.6	21.4	19.9	20.2	
연수생 입국자 수	18,819	21,082	25,919	20,092	10,547	30,354	8,956	
연수생 이탈자 수	13,733	10,957	11,481	6,132	2,355	6,012	310	
연수생 이탈률	73.0	52.0	44.3	30.5	22.3	19.8	3.5	

주: 1) 기준시점은 각 연도 12월 31일이나, 2000년은 3월 31일이다.
2) 미등록근로자 중 이탈자 비율=(연수생 이탈자 수/미등록근로자 수)×100(%).
3) 연수생 이탈률은 해당기간 중 입국자와 이탈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즉 연수생 이탈률=(연수생 입국자 수/연수생 이탈자 수)×100(%).

자료: 중소기업청(2000). 중소기업협동조합(2001) 종합

3. 대한민국 이주 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그렇다면 합법보다 이른바 "불법"이 훨씬 더 많은 비정상적인 인력구조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이는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를 실제로는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온 외국인력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있다..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의 기본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그것의 변형된 형태인 "취업연수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상으로는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일반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들은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적용 받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련 법도 일부만이 적용될 뿐이다. 그것도 10여 년 간의 지난 투쟁을 통해서야 가능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현장은 많이 있다. 더구나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에 취업중인 불법체류자를 묵인하였다. 그곳은 비록 합법이라는 신분을 포기해야 했지만 기본급 6,70만원에 잔업에 특근까지 하면 어쩌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었다. 신분상 위험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많은 산업기술연수생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4.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NGO활동
(외노협의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1995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반인권적 실태를 보다 폭넓게 폭로하게 된 계기는 이듬해인 1995년 1월 9일 명동성당에서 시작된 13명의 네팔인 연수생 농성이었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사회는 물론 전세계적인 충격을 안겨주는 계기가 된다. 당시 농성을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00개 노동, 시민, 인권, 종교 단체가 함께 참가하여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치부로 등록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를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제기하게 된다.

이에 95년 7월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시화일꾼의 집, 한국교회여성연합, 경불련 외국인노동자마을,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외국인노동자 상담 지원단체들과 외국인노동자 공동체 지도자들은 여름수련회를 갖고 한국사회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권리확보와 법제도 개선을 주요 활동 목표로 삼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결성하게 된다. 외노협은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며, 종교, 인종, 국경을 넘어선 평등한 노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교류 및 공동대응
- 외국인노동자 관련 제도개선 운동
- 외국인노동자의 조직화 및 연대활동
- 국제적 공동대응,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회원들의 공동 사업 및 활동으로 삼게 된다(외노협 규약 참조).

1996년

3월"불법 외국인노동자 사면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범 국민 서명운동" 전개했고,범 국민 서명운동 관련 기자회견(민주노총)을 시작으로 4월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한양대)를 갖고 노동절 행사 및 다양한 대중 서명운동과 집회를 가졌고, '김해성 목사 석방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 과 70여개 사회단체가 이를 지지하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및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했다.

그리고 8월과 9월 서울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세계 경제구조 정책에 도전하는 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s Challenging Global Structures"를 주제로 홍콩 소재 Asian Migrant Centre(AMC), Migrant Forum in Asia(MFA)와 공동 주최로 변화하는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아시아, 미주 및 유럽 16개국에서 105명이 참가(8. 28-9.1)했다.

1998년

'선(先) 해결 임금체불 · 산재보상, 후(後) 출국조치 시행과 연수취업제 반대'를 위한 활동을 했으며,이주노동운동의 진전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6월 30일에는 아시아 인권운동의 동향과 네트워크 형성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아시아 태평양 민중회의와이주노동자 권리옹호 캠페인과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아시아 협의회 참가했다.

1999년

외노협 실무자들의 일본 학습 기행.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전일본 네트워크(NNMWS),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 등 20여개 이주노동자 지원 상담단체, 의료기관, 쉼터 및 노조 방문 했고,

귀환 및 재정착에 관한 프로그램 워크샵 개최.

그리고 9월 21일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수도권 12개 상담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공제조합 운영 개시, 회원 가입과 참여 병원망 구축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의료문제 해결 노력.

2000년

<산업 연수생 백서> 발간했고,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허가제 관련 워크샵. 국회인권포럼 "이주노동자 인권과 외국인력도입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하면서 사회 각계인사와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2001년

제7차 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회의 (Reg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및 제2차 MFA(Migrant Forum in Asia)총회 참가. 아시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단체들과 이주노동자 노조원들이 참여하여 각 나라의 이주노동운동의 현안들과 아시아지역 차원의 공동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논의 및 실천과제들을 도출해 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개최된 제4회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포럼 '관서 2001' 참가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어 현대판 노예제도라 비판받는 연수제도와 미등록체류자를 양산 시키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잘못된 제도에 대응하는 한일간 이주노동자운동진영의 공동투쟁 결의.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연대활동의 전망

95년 외노협 결성 이전에는 주로 국내의 NGO단체와 사안별이나 사건 중심적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활동들이 95년 외노협 결성 이후 노동, 인권, 여성, 시민 및 종교단체 등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내 연대활동과 더불어 고정적 채널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질적, 양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이슈가 송출국-고용국간 또는 그 이동에 따른 전지구적 성격으로 인해 외노협은 결성 이래 다양한 국제연대활동을 수행해왔다. 그간의 주요한 활동으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 연대 운동, 98년부터 국내에서 시작된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 캠페인 및 이주노

동자의 날(12월 18일) 공동 행사, 아시아 네트워크 공동 조사연구 사업("아시아 6개국 이주노동자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출판,),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및 워크샵 개최, 정보 및 인적 교류 교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네트워크 연대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접근,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우는 연수제도(일본의 경우 기능실습제)의 철폐와 합법화를 위한 한국, 일본 간의 공동의 투쟁 및 연대가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이주노동자 유입국 간의 공동의 연대의 강화와 동시에 송출국 NGO와의 실무자 교환프로그램 및 귀환프로그램의 연계 또한 앞으로의 이주노동운동에 매우 중요한 활동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May-an C. Villalba

필리핀UNLAD Kabayan Foundation 소장,

~~ILO~~국제이주노동자문제위원회 위원

Ⅰ. 서 론

저는 이 주제의 발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계화의 성격을 규명하고, 둘째 국제이주의 현황을 다룰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가와 이주노동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마을의 제당회사가 1990년 문을 닫았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나의 남편은 수천 명과 함께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의 정문 앞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이웃들도 더 이상 점심 먹으러 오는 노동자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았으며,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된 수백 개의 상점들도 연달아 폐쇄됐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보낼 교통비와 급식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신규노동 소개자가 우리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젊고 예쁜 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춤과 노래연습을 거친 후, 이들은 일본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게될 월수입은 남편이 일년 내내 노동한 임금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으며, 나의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ILO의 이주노동자가족에 대한 사례연구 중에서)

이는 바로 보통사람들 대부분이 직접 겪고 말할 수 있는 세계화의 모습입니다. 이 제당회사가 망한 것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진행된 위험한 선택에 의한 것으로, 무역자유화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 사회가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팽개쳐진 자들을 위해 "안전 망"(safety net)을 구비해야 하겠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기에는 이 망의 구멍이 너무 큰 현실입니다. 이 망에는 몇몇 큰 사탕수수밭의 소유자들은 걸리겠지만 노동자들은 전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쌀을 재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싼값으로 수입되는 쌀 때문에 다른 작물을 경작하고있는 우리 농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장에는 대만 마늘, 한국·일본 사과, 중국 오렌지, 말레이시아 야채오일, 미국 콩·닭고기·돼지고기, 호주 소고기 등으로 넘칩니다. 이러한 수입 경작물은 우리 농부들을 죽음으로 내몰고있습니다. 국가는 정치적 내분에 휘말려 공산품 수입이 확산되는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있으며, 농업부문의 투자에는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 필리핀의 농업은 하향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1990년 45.2%에서 1999년 39.1%로 감소했습니다. 공산분야 역시 서비스분야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은 1995년 GDP의 22%를 차지했지만, 2000년도에는 17%로 떨어졌습니다. 공산분야는 1995년 GDP의 33%에서 2000년 32%로 감소했으며, 서비스분야에서만 45%에서 51%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서비스분야가 상승하는'현상은 태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일본의 통계수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주노동자의 송금은 국가의 주요한 외화수입 산업분야로 자리잡았습니다. 해외필리핀 노동자들이 주로 북미지역에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액수는 연간 US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액수는 US3억 달러로 매우 미약합니다.

저는 미국 다음으로 필리핀이 세계에서 가장 세계화된 경제의 모습을 이룬 것으로 확신합니다. 필리핀 인구의 10%인 7백만의 필리핀해외노동자들이 전세계의 150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연간 60억불에 달하며, 이는 본국의 침체된 페소화를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경제력입니다. 필리핀의 경제구조는 해외에 주둔해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닮은꼴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자본을 해외에 유치한 반면, 필리핀은 노동력을 해외에 주둔시킨다는 점에 있으며, 양국 모두가 이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Ⅱ. 세계화

세계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와 지식을 동시에 세계적으로 보다 잘 유통시키게 만든 정보와 통신기술 혁명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이로써 수많은 개성과 상표의 이름을 전세계가 즉각 알아볼 수 있도록 문화적·상업적 이미지를 거의 방해받지 않고 유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는 국제적으로 무역과 금융 유통의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6년 상품의 세계수출은 세계 GDP의 29%를 차지했으며, 해외직접투자 유치는 국내 총 투자의 6%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이는 단지 여러 과정에서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부분만을 참조한 것입니다. 세계화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재할 수 있는 국가적 요소를 최소화시키도록 변화시킨 보다 높은 세계기구의 계획에 따른 것이며, 점차 세계기구들이 이러한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는 "지형의 소멸"과, 특히 "민족국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 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사회에서는 세계화가 특히, 민족국가의 권위와 중요성을 계속 와해시키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노동을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는 이주노동을 위한 광범위한 조건을 창출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게는 적대적인 이주노동의 규제를 가하게 만드는 양날의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족국가들은 국가적 정체성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일률적인 교육체제를 의존했으며, 자국의 국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보장시키도록 국가의 권력을 의존했었습니다. 국가는 기업과 아울러 형식적이긴 하지만 임금·노동기간·노동자를 위한 혜택 등이 보장된 사회복지 법을 관장했었습니다. 세계화는 무역을 위해 여러 나라들의 문을 개방시켰으며, 자본·기술·상품의 유입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를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들에게 보다 큰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의 고용에 있어서 임금과 노동의 조건에 대한 결정권 및 상품생산의

형태와 규모에 대한 결정권이 민간기업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이 단지 형식적으로 존재했었던 복지서비스제도 마저 이제는 흔연히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국가들은 지역적·세계적 기업들과 무역 블록들의 논리에 따른 재조정 국면에서, 국가들의 고유한 역할들을 축소시키기 위한 선택들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스터커(Stalker)에 따르면, "국가에 의해 양도된 기능들을 떠맡게 될 현 세계기구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의 통치와 규제에 있어서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합니다. 세계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결책은 알려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계화는 교활함의 극치입니다. 자유무역은 좋지만, 약탈의 무역행위는 그렇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바로 인력과 자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존하는 체제이며, 모든 아시아정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 세계질서'는 다행히도 민중들이 제한적인 방법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약간의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이에는 통신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민중들간의 접촉과 활동이 보다 원활해졌다는 점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이 민중운동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면, 세계화로 알려져 있는 상호 연결된 복잡한 웹의 과정이 언젠가는 이주노동자들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하층 계급인 우리 노동자들의 유익을 위해 풀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Ⅲ. 국제 이주

세계화의 가장 큰 아이러니 또는 불공정의 모습은 바로 자본·투자·무역·기술분야의 유통은 확산되고있는 반면, (일자리를 추구하려는 민중들의 운동인) 노동의 유입은 여전히 민족국가들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사실 노동을 받아들이는 여러 국가들은 경제적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마지못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자국의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매우 꺼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주노동에 관한 세계적인 데이터를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국가별 인구조사에 기초한 최근의 세계적인 이주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이주인구가 7천5백만에서 1억2천으로 증가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연간 1.9%의 상승률로 동일기간의 세계인구 평균성장률인 1.8%를 약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데이터는 이주노동자와 이민거주자, 난민을 포함한 외국태생의 인구를 참고한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가장 큰 이주노동의 흐름은 흔히 추정하는바와 같이 선진국(: 45%)으로 향하기보다는 개발도상국(: 54%, 6천5백만)으로 향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주노동 유통지역으로 4천3백만의 인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총 이주노동자의 3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총 이주노동자의 66%가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하고있습니다. 유럽은 아시아 다음가는 이주노동의 종착지로서 총 이주노동자의 20%(2천5백만)에 해당하며, 북미는 세 번째로 총 이주노동자의 19%(2천3백만)이며, 네 번째는 오세아니아로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4백6십만에 불과합니다.

주요 노동 수입국가로 인정받은 나라의 수는 39개국에서 67개국으로 증가했으며, 주요 노동 수출국가로 인정받은 나라들은 29개국에서 55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동을 수입함과 동시에 수출하는 국가들의 수 또한 4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노동무역이 세계화된 오늘날의 경제적 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노동무역은 세계화된 이 세계의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중동지역의 경험은 이의 실질적인 교훈을 말해줍니다.

고대 중동지역에서의 이주노동은 (노예란 신분으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의 이주노동과 동일한 직종으로) 문명의 시대이래 존재했었습니다. 아랍인구 가운데는 수많은 이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아랍국가들 가운데 노동무역의 가장 극적인 상승 움직임은 바로 1973년도의 오일가격 흥행시기와 더불어 발생했습니다. 산유국들이 대량의 기반산업 개발프로그램들을 착수하면서 아랍이주노동자들의 정상적인 공급이 딸리게 되자, 아시아의 노동자들이 호출됐으며, 계속하여 이들은 부자 산유국들의 건설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인제 대부분의 이들 국가에서는 현지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노동력이 현지국가의 노동력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요구가 아랍 이주노동의 요인이 됐으며, 아시아인들이 대거 중동지역에 투입됐습니다. 1975년부터 1990년 사이에 7개의 산유국들이 신규 채용한 이주노동자들은 110만에서 520만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원유의 수익이 하향국면에 들어서자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요구 역시 감소됐지만, 호텔·병원·학교 등에서 일할 서비스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지 노동자에 대한 요구는 증가했습니다.

거의 10년의 유가 흥행시기가 지나고 난 후, 일본 및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신흥경제산업국들(NIEs) -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 은 자체의 노동구조와 노동요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와 장기화된 성장률로 인해 경쟁의 세계 속에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보다 값싼 노동을 추구했습니다. NIEs에 이어 일본은 노동집약적인 생산무대를 해외로 배치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은 이러한 해외무대진출을 약간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을 공식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의 공식정책은 "노동"의 유입허용 불가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직업훈련·학생·문화예술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가장한 여러 위장조건들로서 해외노동자들의 유입이 허용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이들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입국비자의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건설노동자·청소부·노동착취공장의 노동자·댄서· 야간유흥의 접대부 등으로 노동시장의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의 입국비자 만기 체류는 106,000명에서 297,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3D업종에 종사한 자들이었으며, 1995년 일본은 최고기록인 136만 명의 외국인노동자 주둔을 인정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의 홍콩과 싱가포르의 급격한 경제성장률과 노동부족현상은 가능한 모든 현지 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 가동시킴으로써 해결됐었습니다. 집에 있는 노인·장애인·가정주부 할 것 없이 모두가 사무실과 공장에서 일하도록 권장했던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1995년까지 노동력의 21%가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워질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이주노동 의존국가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생산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해외로부터 생산노동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단기비자로 입국시키는 "산업연수"(industrial trainees) 제도라는 기발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됐는데, 중소기업들은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데려다 새롭게 고용할 수 있는 선택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아시아는 1990년대 중반까지 2백6십만의 계약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을 수출하는 나라들을 보면, 특히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는 가난과 정치적 분쟁이 하나의 대규모 외국인노동자 송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코트디부아르·남아공·나이지

리아 등의 해안국가들은 내륙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의 전통적인 정착지였습니다. 남아공의 경우, 인구의 20%정도가 밀입국 노동자들로서 8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짐바브웨 · 레소토 · 모잠비크 등의 인근국가들로부터 밀입국한 자들입니다.

199년대 초 공산주의 붕괴에 잇따른 동유럽의 정치적 대격변은 9백만의 소비에트시민들이 우크라이나와 그밖에 다른 민족국가들로부터 고향인 러시아로의 이주를 촉진시켰습니다.

남미의 경우, 지배적인 주요 노동의 흐름은 미국과 캐나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적긴 하지만 인근국가들로부터 아르헨티나 · 브라질 · 멕시코로 유입되는 중요한 이주노동의 흐름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국과 캐나다로 옮겨가기 위해 멕시코로 유입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에는 페루 · 볼리비아 · 파라과이로부터 밀입국한 20만여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 캐나다 · 유럽과 같은 전통적인 노동수입국가들은 산업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이민수용국가들입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노동 유입은 대개가 국가적인 공식정책의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1965년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을 가진 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이민수용정책(Immigration Nationality Act)을 선포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유럽인보다는 아시아인과 남미출신들이 보다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1990년까지 미국의 88%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유입됐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지역에서도 5백만의 밀입국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캐나다는 자국의 노동시장 수요와 필요성에 입각하여 1967년 입국법의 자유화를 제정했습니다. 전문직인 의사와 간호사의 이주를 특히 선호했었으며, 1990년대까지 캐나다로 이주한 대다수는 아시아계였습니다.

서유럽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1950년대 중반부터 해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50년대에 카톨릭국가인 스페인 · 이탈리아 · 포르투갈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권장했었으며, 이들의 공급이 딸리게되자 옛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국가들로부터 이주노동자를 채용했습니다.

독일은 1960년대 노동부족현상이 생기면서 이탈리아 · 그리스 · 터키 · 유고슬라비아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1973년까지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자국의 노동력 10-12%에 달하는 250만의 해외이주노동자를 고용했었습니다.

Ⅳ. 노동권 문제와 고용불안 요인

이주노동은 공급입장에서 보면, 실직과 경쟁할 수 없는 임금에 대한 문제의 해결로 보여집니다. 한편 수요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노동과 인구통계학적 재조정 및 노동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취약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필리핀여성에 관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안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여성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혀준다. 즉 자기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장 공급해주고, 보다 안정된 미래의 삶을 일구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에 간 유흥접대 여성이 현지남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탈리아 언론인에 따르면 "유복한 이탈리아 가정이 어린이양육의 질을 요구하고 잘 대접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너희나라의 여성을 수입할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측면 모두가 이처럼 노동무역을 원하고 혜택을 얻는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임금격차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따르면, 세계화의 효과 가운데 하나는 "가격균등화 요인"(factor price equalization)에 있습니다.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상품 · 사람 · 자본이 이동하는 것은 국가들간의 가격을 균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노동은 저임금 경제로 옮겨져야 하며, 자본은 이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로써 이주노동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게는 임금하락의 효과가 주어져야 하겠지만, 이주노동 송출국가들은 이의 상승을 요구합니다. 이 이론은 양 국가간의 이주노동 비용의 격차가 여전히 두드러질 경우, 어느 수준까지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를 조건으로 상정하고있는 것입니다. UNDP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1년 사이에 세계의 부유층인 전세계 인구 20%의 수입은 70%에서 85%로 상승한 반면, 세계의 빈곤층 수입은 2.3%에서 1.4%로 감소했다. 1993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세계의 GDP US$ 23조 가운데 선진국이 US$ 18조를 차지했으며, 개발도상국은 US$ 5조에 불과했다"고 밝히고있습니다.

서방의 부자나라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생활수준과 임금 격차가 세계이주노동의 주요요인인 것입니다. 국가들간의 잠재적 수입의 차이점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적나라한 방법은 바로 각 수도의 평균 수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멕시코와 미국의 경계지역에서 나타납니다. 1996년 체포된 미국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주당 US$ 278을 벌어들인 반면 국경선 근방의 멕시코에서는 주당 US$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1의 비율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폴란드-독일의 경우, 1996년 폴란드 건설노동자가 독일에서 일한 시간당 임금은 DM7인 반면 폴란드에서는 DM2에 불과했습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경우, 1997년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자국에서는 일당 28센트를 받았지만 이웃나라인 말레이시아에서는 2달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당 노동비용의 산출은 이주노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격차를 드러내줍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여러 과정들에는 본질적으로 민영화나 경제의 자유화라는 국가적 여러 과정들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절차들은 새로운 세계화의 전망이란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고있는 것입니다.

인구통계 및 노동의 구조개혁

해외노동은 대개가 단기체류이며, 임의적인 종결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직업의 안정이란 없으며, 이들의 고용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가정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즉, 이들은 경제적인 가치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들과 단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지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 · 보험 · 퇴직 · 연금 등 그밖에 복지조항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가격과 임금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자신들이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하고 자국으로 돌려보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동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는 다양하며 곧 변경될 수 있는 직종들입니다. 해외이주노동자들은 매우 유동적으로 쉽게 소모할 수 있는 일회용 자원인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들은 필요에 따라 생산공장의 노동자, 유흥업종사자, 가정부, 실업자 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및 점차 일본에서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복지계통의 서비스직종

(:caregiver)이 새롭게 고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자국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직종을 현지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IT산업의 번창으로 정보기술분야의 이주노동자를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젊고 유능하며 쉽게 대체할 수 있는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요구는 오로지 단기체류와 계약갱생불가를 허용하는 제도화된 노동정책 및 "산업연수"라는 제도의 채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쟁과 아시아금융위기

자본은 이윤을 좇아 배치되며 노동은 자본에 따라 배치됩니다. 이는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세계화와 매우 경쟁적인 경제의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로써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은 유동적이며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로 하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의 실질적인 예로 대만과 싱가포르의 전자제품공장들이 미국과 서방유럽 시장으로의 상품 운송비 절감정책으로 인해 멕시코와 동유럽으로 옮겨진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노동력이 싼 중국으로 이전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기업의 폐쇄와 함께 대량의 실직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을 수출하는 여러 아시아국가들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수출국가들로 하여금 서로의 임금을 삭감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대량의 자본과 투자의 고공비행은 기업의 재배치와 폐쇄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경제계 및 노동시장의 계약체계가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지고용이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를 강타한 5개국들은 공식 노동분야에서 비공식 노동분야로 (투명성이라는) 체제적인 대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더욱 가혹하고 직접적인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한국, 대만, 태국에서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송환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체류의 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귀국할 길조차 망막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해외로 내보낸 국가의 정부들은 타지에서 홀연히 일자리를 잃어버린 자국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버티도록 권장했는데, 이유인즉 이들 정부로서는 이들을 받아들일 여건이 구비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량 배치가 노동을 수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추진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양국의 경계 사이에서, 고용국가나 이들을 보낸 조국 모두에 의해 버림받은 현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9 · 11 테러사태와 세계경제 침체

오늘날 세계의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9 · 11 테러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결과 가져올 미국 및 세계화의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과의 상관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관계에 놓여있는 모든 국가들은 서로 미치는 상호작용 때문에 현재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침체현상 및 이주노동자들과 이들 가족들을 포함한

보통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 파급적인 효과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국내소식을 인용하자면, 오늘 신문은 금년도 국내로 들어오는 송금액수는 작년도 61억 US$에 비해 6억 US$나 떨어진 55억 US$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중앙은행(BSP) 통치자의 말을 빌면, "우리는 현재 불안한 시기에 살고있으며 일부 OFW들은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일부는 임금이 삭감될 것이며, 개중에는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다"라고 밝힙니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심한 타격을 입은 자들은 특히 중동지역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곳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송환, 고용정지, 실업사태 등은 조국의 가족들에게 심한 고통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입국을 규제하며 해외이주노동자의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보다 강경한 정책들이 현재 노동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의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외국인 현지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의 또다른 시도와 함께 부과된 노동수입 할당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중입니다. 대만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식비보조금 NT$ 3,000 삭감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을 보내는 국가들이나 받아들이는 국가들 모두가 펼치는 정책적 효과는 대체로 보호받을 수 없는 미등록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수만 증가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Ⅴ. 노동의 보장과 보호

자국에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이주노동자들 및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침해에 책임져야 할 국가에게 있어서 항상 도전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새로운 삶의 길과 새로운 노동조건에 직면해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준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오늘날의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이며, 특히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국제기구와 보호기준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standards of protection)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여러 가지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합의 및 권고사안들로 마련돼있으며, 현재 ILO는 이들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국가들을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UN 또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이들 가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바로 1990년 UN총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보호장치는 바로 국가들이 이들 협약을 법제화시키는데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주노동자문제에 관한 가장 규범적인 장치는 ILO가 관여한 국제협약 97이며, 이는 1949년도에 채택되고 개정된 것입니다. 협약97은 바로 "고용을 위한 이주노동"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한국 · 미국 · 일본 · 싱가포르 · 필리핀 등을 제외한 39개국에 의해 승인됐습니다. 이 협약에는 고용을 목적으로 이주한 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제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여러 규정들이 담겨져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 의

료 · 금융 서비스에 관한 조항들도 포함돼있습니다. 국제협약 97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가입 권리 및 형사 · 민사 소송에서의 법적 구제조치 사용권 또한 규정하고있습니다.

ILO협약 143은 이주노동에 대한 조건의 남용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처우의 촉진을 다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16개국에 의해서만 비준돼있습니다.

1990년도에 UN에서 통과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이들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UN협약"은 17개국의 비준을 거쳤으며, 앞으로 3개국의 승인만 더 얻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990년도의 UN협약은 전세계의 인권선언에 입각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들도 이와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UN협약은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요청하고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신체적 · 성적 남용현상을 비난하며,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과 노예상태, 징벌이나 강요된 강제노동행위를 금지합니다.

국가적 입법화 (National Legislation)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적 입법화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ILO는 22개국의 국가적 법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으며, 거의 800개의 법적인 관련조항을 조사하고 분류했습니다.

문제점 (Issues and problems)

현재까지 UN협약은 19개국의 비준을 얻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영향력이 작은 국가들이며 주로 이주노동자를 내보내는 국가들입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문명국가이며 인권옹호국가라고 자처하는 선진국들 가운데 어떤 나라도 1990년도 UN협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ILO의 협약과 권유사안들은 소수의 승인만 얻고있는 상태입니다. ILO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들의 관심을 돌려 보다 많은 국가적 승인을 얻어내도록 활발한 작업을 펼쳐왔습니다. 최근에 마다가스카르가 ILO의 협약 143을 승인했는데, 이는 ILO가 그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ILO의 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문제에 관한 보다 많은 개인의 관심과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ILO의 성문제촉진프로그램(Gender Promotion Program)은 노동의 착취 형태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자료적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ILO의 또다른 노력은 노동수출국가들로 하여금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매년 송금액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있는데, 1970년도에는 20억 US$ 미만이었던 것이 지금은 730억 US$로 크게 증가했다. 몇몇 권유사안들을 보면, 이들의 송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생산적인 체제 및 소규모금융으로 전환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협약들과 UN의 규정들이 마련되고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전의 협약과 규정들을 파기시키는 경향들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197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근절을 위한 UN협의회'는 국가들에게 "은

퇴연금과 그밖에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사회적 보장 분야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었다.

◉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한 UN국제협의회'의 행동강령, 제5장 국제이주에 의하면 "국제이주는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영향을 미치고 받는 상관관계로서 모두가 연결돼있다. 국제적 경제의 불균형, 가난, 환경파괴, 평화와 안보의 부재, 인권침해, 사법적 · 민주적 제도의 변화 발전정도 등 모두가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이주자의 본국과 이주신청국가의 정부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발전적 삶을 양위할 수 있는 국가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추구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들간의 보다 나은 경제적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들의 경제적 변화조치가 한층 강화돼야 할 것을 보여준다.

외국인 혐오증이나 인종차별적 행위, 특히 9 · 11 테러사태 이후 외국인이주노동자들과 외국인들을 겨냥한 제재조치 등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취약성 및 이들에 대한 보호와 안전이 부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의 높은 범죄사건에 대한 비난은 반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안전과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성 부족현상은 방어주의적 운동을 말해주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국제협력관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지의 노조들은 이주노동자를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노조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정당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원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을 현지의 노조와 별개의 노조로 분리하는 것은 기껏해야 말로만 이들의 연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노동을 송출하는 국가의 노조들은 이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이며, 경제적 침체현상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본래 직종 및 생존에만 매달려있는 판국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핵심은 바로 비용, 그밖에 사회적 · 경제적 의미, 그리고 노동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인정하고 떠맡기를 거부하는 책임감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국제적 규범들과 그밖에 인권조항을 보면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전자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며 지속시킬 수 없는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신분상 무력함은 바로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와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또는 강력한 이주노동자 조직 및 노동운동을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셀프-헬프(self-help) 수준에 있으며, 상호간의 원조와 도움을 주는 위치에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은 대개가 성격상 노동환경문제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사전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고용국가들의 법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조직을 적지 않게 금지하고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현지 노동자들 노조와 일본의 공동체 노조를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들의 주요 노조활동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들 노조들은 협상능력이 미약하며, 개별적 수준에서 단일의 노동자-고용주 원칙으로 움직이는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Ⅵ. 결 론

이주노동자들은 이 세계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진정 위선으로 보이는 인도주의적 원조행위를 통해 자선을 베풀게끔 하는 자부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집과 공장 안에서 지내고있을 때 우리는 진정 이 세계의 억눌린 자들을 염려하고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고용국가가 방문하여 너는 인간이 아니거나 혹은 나 이방인을 네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인간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다.

고용국가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인권기준들을 준수하려면, 여러 ILO의 협약들과 UN협약들을 승인하고 국가에 적절한 이주노동법을 공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결국, 고용의 안전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은 이들 자신들의 조국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즉, 적절한 직업과 타당한 임금 및 생활의 안전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보상돼야 할 곳은 바로 이들의 조국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 매일같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노동 송출국가들의 상황에서, 일자리의 보장은 아마도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즉,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MIGRANT WORKERS RIGHTS TO LABOR SECURITY UNDER NEO-LIBERAL GLOBALIZATION[1]

By May-an C. Villalba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RI)

I. Introduction

Greetings

I would like to divide this presentation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to deal with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globalization. The second part is to deal with international migration. The last part is to deal with the state and issues of migrant labor rights.

The sugar milling company in our town closed down in 1990. My husband who was a worker in the sugar cane field lost his job, along with thousands others. My neighbor who had a food shop near the gate of the company closed down because the workers who ate there for lunch stopped coming to lunch. Hundreds of other shops closed because of lack of business. Most workers went to the city to look for other jobs. Our children had to stop going to school. We could not give them transportation and food allowances for school.

Miraculously, a labor recruiter visited our village and promised to give jobs to young and pretty women in our village. They would undergo training in dancing and singing and they could earn fabulous incomes in Japan, They could earn in months what our husbands earned in years. My daughter is now a dancer in Japan. My husband is still jobless but my younger children are back in school. (from case studies of migrant worker families in Iloilo)[2]

For ordinary people, this is their most direct experience they can describe about globalization. The sugar industry collapsed as a result of trade liberalization, a hazard which the country chose to undergo when it signed up as a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re were supposed to be safety nets put in place to catch those who would be thrown

1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NGO forum for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December 12-14, 2001, Seoul, Korea, organized by the Christian Institute for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2 Unlad Kabayan Report

out of the economy for the sake of efficiency but the holes in the net were too large to catch the poor workers. I guess the net caught some big sugar plantation owners, but none of the workers. This has also happened among our rice farmers and those planting other crops as cheap rice from other country was imported. We are flooded with Taiwan garlic, Korean and Japanese apples, Chinese oranges, Malaysian vegetable oil, American soya, chicken, pork and Australian beef. These imports are killing our farmers. The state was too preoccupied with political infighting to notice that while commodity imports were growing, hardly anyone was investing in agriculture. The result has been a decline in Philippine agriculture. Over a ten-year period, the agricultural labor force declined as a percentage of the labor force from 45.2% to 39.1% from 1990 to 1999. The manufacturing sector is likewise declining in relation to the services sector. While agriculture accounted for 22% of the GDP in 1995, it dropped to 17% by 2000. Manufacturing accounted for 33% of the GDP in 1995 and dropped to 32% in 2000. Only the services sector contribution grew from 45% in 1995 to 51% of the GDP in 2000.[3)]

The growth of the services sector over other sectors seems to be the trend in Thailand, Singapore, Malaysia, Taiwan,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statistical figures show.[4)]

On the other hand, migrant worker remittances is becoming the main dollar earning industry of the country. Up to US$6 billion is remitted annually by overseas Filipino workers (OFW) mainly from North America. Annual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pale in comparison at US$300 million.

I would wager that the Philippines is the most globalized economy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with about 7 million overseas Filipino workers representing 10% of the population, who earn incomes in 150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enough to send US$6 billion annually to prop up the sinking peso. The Philippine economy is like the US economy. It is located overse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it is American capital that is located overseas while it is Filipino labor that is located overseas. And both countries are proud of that.

II. Globalization

Globalization is much more than this of course. It refer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s which have made the flow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more instantaneous and global than ever before. This has made possible the almost unhindered flow of cultural and commercial images that makes thousands of personalities and brand names instantly recognizable the world over.

3 National Census Statistics Office, 2000
4 Far Eastern Economic Yearbook, 1996 and 2001.

Globalization refers to the phenomenal growth of trade and finance flows internationally. In 1996, global exports of goods represented around 29% of world GDP and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ounted for around 6% of gross domestic investment.[5)]

Bu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these refer merely to internationalization of various processes. Globalization refers to a higher plane of organization which renders national entities less able to intervene in decisions and which allows global bodies to increasingly make those decisions. Globalization refers to a new world order that sees the death of geography and in particular the demise of the nation state.[6)]

We, in migration circles are particularly concerns about globalization continuing to erode the authority and significance of nation states. It becomes a double bladed weapon that creates widespread conditions for migration in the sending countries on one hand, and hostile migration controls in the receiving countries, on the other.

In the past, nation states relied on a modern media and uniform systems of education to create national identity and state power in order to ensure welfare and services to its population. State owned corporations and social welfare laws ensured wages, tenure of work and benefits to its workers, although often in theoretical terms only. Globalization has opened many nations' doors to trade and removing various restrictions on the entry of capital, technology and goods, giving private corporations a bigger share of decision making power, for instance, in the hiring of workers, in determining wages and conditions of work and in determining the type and amount of products to be produced. Welfare and services which were merely theoretically available for the most part, were now unceremoniously thrown away.

States are deliberately choosing to reduce their own role in order to realign themselves according to the logic of regional and global corporations and trade blocks.

According to Stalker, this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global governance and regulation, since at present the global institutions that might take over the functions ceded by the state remain relatively weak.[7)]

Most of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globalization are known. It is the implementation that is tricky. Free trade is good, predatory trade is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can produce millions of new jobs and stunning economic growth but this depends on the free movement of

5 Stalker, Peter. Workers Without Frontier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ILO publication. Switzerland. 2000. pg.1
6 Ibid.
7 Stalker, Ibid.pg. 9.

people, capital, information, not something all Asian governments embrace.[8]

Fortunately, the new world order provides some crude mechanisms for people to participate in a limited way. This includes dramatic developments i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n more face to face contacts between people. If these developments can be harnessed by peoples movements, then the complex web of interrelated processes known as globalization can in time be unraveled for the benefit of migrant workers, the lowest class of workers in most states.

III. International Migration

The greatest irony or perhaps injustice in globalization seems to be, while the flow of capital, investments, trade and technology is growing, the flow of labor (the movement of people looking for work) is still firmly controlled by nation states. There is grudging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as a means to ensure the economic survival of many receiving states, but there is a great reluctance to treat them as workers with the same rights as local workers.

First let us look at some global data on migration.

Recent global migration data based mainly on national censuses show an increase of migrant stock populations from 75 million to120 million for the period 1965 to 1990. This is an increase of 1.9% annually,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global growth in population which is 1.8% annually over the same period.[9] The date refers to foreign born populations, including migrant workers, emigrants (who may have become citizens of their new country) and refugees.[10]

Significantly, the largest flows of migrants are to developing countries, 65 million (or 54%) rather than to developed countries (45%) as often assumed. Asia accounted for the greatest movements of migrants with 43 million migrant populations. That is 36% of all migrants and 66% of all migrant workers migrating to developing countries. Europe follows Asia as the second largest destination of migrants with 25 million (representing 20% of all migrants). North America is third with 23 million migrants (representing 19% of all migrants). Oceania is a far fourth with 4.6 million migrants.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qualified as major receiving countries increased from 39 to 67

8 FEER Review, Asia 2001/pg.11.

9 Stalker, p.6.

10 Patrick Taran cites the figure of 150 million people living temporarily or permanently outside their countries of origin, 80-97 million of whom are estimated to be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quoted from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Geneva, 1999, Report III:4.

countries. Those countries qualified as major senders increased from 29 to 55 countries. The increase in number of both major receiving and sending countries also dramatically increased from 4 to 15 countries.[11]

All these seems to indicate that labor trade is becoming a part of the economic realities of a globalizing world. There is increasing recognition that labor trade is a factor in the growth of economies in a globalizing world. The experience of the Middle East is instructive.

In the ancient Middle East, migrant labor (which had a different name then, slavery, but which is essentially the same) was a reality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There was a lot of movement among the Arab population. A dramatic upswing of labor trade among the Arab states occurred during the oil price boom of 1973. As the oil states embarked on massiv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s, the normal supply of Arab migrants ran out. Asian workers were called in and continue to be called in into the oil revenue rich countries. In most states, non-nationals now dominate over nationals in the labor force.[12]

The demand for construction workers was the cause of migration of Arabs and Asians into the Middle East. Between 1975-1990, seven gulf states had recruited 1.1 million to more than 5.2 million migrant workers, mostly from Asia. As oil revenues declines, from 1985 onwards, the demand for construction workers likewise declined but the demand for service workershotel worker, hospital and school workers and domestic workersincreased.

About a decade after the Oil Boom, Japan and the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 of east and southeast AsiaSouth Korea,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were experiencing their own changes in labor structure and demand. In Japan an ageing population and prolonged growth rates caused companies to seek cheaper labor as a means to survive in a competitive world. Japan, followed by the NIEs relocated labor intensive stages of their production overseas. The big companies managed this relocation with a few problems. But the medium and small industries could not survive without recruiting foreign workers. Japan did not officially embark on a policy

11 Ibid. pg.7.

12 Labor Force in Gulf States in 1990 (%)

Country	Nationals	Non-nationals
Bahrain	47.0	53.0
Kuwait	21.3	78.7
Oman	39.1	60.9
Qatar	18.3	81.7
Saudi Arabia	44.8	55.2
United Arab Emirates	8.0	91.1
Total	36.8	63.2

Source: Migration, ILO. Geneva. Nov. 1992.

to recruit foreign workers. Official policy did not allow the entry of labor. By clever manipulation workers were allowed under various guises as tourists, trainees, students, or cultural artists. These people filled up vacancies as construction workers, cleaners, sweatshop workers, dancers and night entertainers, who invariably overstayed their visas. From 1990-1993, overstayers increased from 106,000 to 297,000.[13] They were to what was called as 3D jobs. By 1995, Japan acknowledged 1.36 million foreign nationals, a record high.

The rapid growth rates of Hong Kong and Singapore in mid-80's and labor shortages was resolved through the mobilization of all available local workers into the labor force. Old people, handicapped persons and housewives were encouraged to go out of their homes to work in offices and factories. This left a gap among caregivers which was bridged through the hiring of domestic workers and nurses. Singapore is the most dependent state in Asia when it comes to foreign workers with 21% of its labor force being foreign workers by 1995.

Taiwan and South Korea experienced labor shortag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decided to hire manufacturing workers. In Korea, there were hired under ingenious scheme as industrial trainees with short-term visas. Small and medium companies had the option of terminating them and hiring new ones in order to maintain depressed wages.

East Asia accounted for 2.6 million contract workers by mid 1990s.

Poverty and political conflict in the sending countries have also been factors in the large scale migration of workers in other global regions such as Africa and Eastern Europe. In Africa, coastal countries such as Ivory Coast, South Africa and Nigeria have been traditional destinations of migrants and refugees from inland states. In South Africa, about 20% of the population are undocumented workers numbering up to 8 million. They are from neighboring states such as Zimbabwe, Lesotho and Mozambique.

The political upheavals in Eastern Europe following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early 1990s also pushed up to 9 million Soviet citizens to move from Ukraine and other ethnic States to the Russian homeland.[14]

In South America, the dominant flows are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re is a significant though lesser flow of migrants to Argentina, Brazil and Mexico from neighboring countries. A large portion of flows into Mexico are migrants in transit to the US and Canada. Argentina had about 200,000 undocumented workers from Peru, Bolivia and Paraguay.

Traditional receiving countries such as the USA, Canada and Europe are the largest migrant

13 Stalker, p. 30.
14 Ibid. p.32.

receiving countries among industrial countries. The flow of migrants to the USA has been largely the result of official policies. In 1965, the Kennedy and Johnson administrations promulgated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which allowed immigration of people, who already had relatives living in the USA. Asian and Latin Americans rather than Europeans took advantage of this. By 1990 up to 88% of migrant workers in the US were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USA also hosts undocumented workers mainly from Mexico in the region of 5 million.

Canada instituted liberalization of immigration laws in 1967 based on the needs of the Canadian labor market. Professional doctors and nurses were preferred. Thus a large percentage of immigrants to Canada by the 1990s were of Asian descent.

Western Europe has been recruiting foreign workers since the mid 1950s as a result of labor shortages. France encouraged workers from the Catholic states of Spain, Italy, Portugal in the 1950's. When supplies were exhausted, France recruited from former colonies in the North African states.

Germany recruited from Italy, Greece, Turkey and Yugoslavia when labor shortages occurred in the 1960s. By 1973, France and Germany each had 2.5 million foreign workers accounting for 10-12% of their labor forces.

IV. Issues of labor security and causes of insecurity

Migration is seen, from the supply side, as a solution to joblessness and uncompetitive wages. On the demand side, foreign workers are a solution to labor and demographic restructuring and real labor shortages.

A study conducted among Filipino women in vulnerable jobs revealed that economic security is the main reason why women go overseas to work. To be able to provide for their families' needs today and secure their future. The same reason why women entertainers in Japan end up marrying local men.[15] And according to an Italian media person, so long as prosperous Italian families demand for quality child care and pay well, we will continue to import your women.

If both the demand and supply side desire and benefit from this trade in labor, what is the problem?

Wage disparities

15 Villalba, Maria Angela, Good Practices for the Protection of Filipino Women Migrant Workers in vulnerable Jobs, a report for ILO-GENPROM, Geneva, April 2001 (soon to be published).

According to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one effect of globalization is factor price equalizaton. Goods, people, capital moving across national borders should tend to equalize prices between countries. Labor should travel from low wage economies and capital should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16)]

This should have the effect of depressing wages in migrant destination countries while raising them in sending countries. The theory argues that some level of equilibrium is reached when the remaining wage gap represent just the cost of migration between the two states.[17)]

The theory stipulates disparitie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According to the UNDP, between 1960 and 1991, the share of the global income of the richest 20% of the world's peoples rose from 70% to 85% while that of the poorest declined from 2.3% to1.4%. By 1993, of the US$23 trillion of global GDP, US$18 trillion was in industrial countries and only US$5 trillion was in developing countries.[18)]

The disparities in living standards and in wages between richer countries of the West and of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s the main cause of global migration. The crudest way to assess differences in earning potential between countries is in terms of average per capital income.

This is most stark in the Mexico-US border area. A survey conducted among apprehended undocumented workers in 1996 reveal that migrant workers earned US$278 per week in the US compared to US$31 per week on the Mexican side of the border. That is a ration of 9:1.

In Poland-Germany hourly wages for Polish construction workers in Germany in 1996 were around DM7 compared to DM2 they could earn in Poland. In Indonesia-Malaysia in 1997, Indonesian laborers could earn 28 cents a day at home compared to $2 in neighboring Malaysia.

A selection of hourly labor costs show disparities which could be the basis for migration.[19)]

16 Ibid.p. 11.
17 Ibid.
18 Ibid. p. 17.
19

Hourly Labor Costs in Manufacturing 1980-1995 (in US$)

Country	1980	1995
United States	9.87	17.20
Canada	8.67	16.03
New Zealand	5.33	10.11
France	8.94	19.34
Germany	12.33	31.88
UK	7.56	13.77
Denmark, Finland	8-12	24.00
Switzerland	11.09	29.28

In practice, many so-called global processes subsume many processes which are essentially national such as privatization or economic liberalization. But these national processes are being conducted at the behest of the new globalization vision.

Demographic and labor restructuring

Overseas work is largely short term and subject to arbitrary termination. Migrant workers have no real job security. It is small and middle scale businesses or individual families who require the employment of overseas workers. They are seen as economical because the companies contract them for short periods and thus escape responsibility from paying health, insurance, retirement, pension and other welfare provisions which otherwise are provided local workers. These companies are the most susceptible to price and wage fluctuations and are just as soon ready to offload their migrant workers and send them home.

The jobs in demand by receiving countries are variable and can change on short notice. They are highly movable and dispensable resources. In East Asia they are the manufacturing workers, entertainment and domestic workers who are needed and abandoned as the need arises. In the USA, Europe and increasingly in Japan, caregivers, e.g. nurses and physical therapists are now hired as the ageing population in these countries increase and because these are jobs that do not appeal to the local population. In other countries, the demand is now for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as the IT industry flourished.

The demand for younger, fitter and easily replaceable migrant workers has been institutionalized labor policies that provide only short-term and non-renewable contracts and through the adoption of the trainee system.

Czechoslovakia		--		1.3
Hungary		--		1.7
Poland		--		2.09
Russia		--		0.60
Japan		5.52		23.66
Singapore		1.49		7.28
Hong Kong		1.51		4.82
Taiwan		1		5.82
South Korea		0.96		7.4
China		0.25		0.25
India		0.44		0.25
Malaysia		0.73		1.59
Indonesia	0.16		0.30	
Philippines		0.53		0.71
Thailand		0.31		0.46

Source: Morgan and Stanley and Co. Inc. 1996 (as quoted by ILO)

Global competition and the Asian Financial crisis

Capital locates profit and labor locates capital. This a truism in a globalized and highly competitive economy that has put labor and migrant labor at great disadvantage. It has reduced them to become movable and replaceable resources.

A clear example is the relocation of electronics factories from Taiwan and Singapore to Mexico and Eastern Europe to cut down cost of transporting goods to the US and West European markets. And the transfer of many factories in labor cheap China. All these resulted to company closures and job losses. It has pitted labor in these countries with those of traditional labor exporting countries in Asia. That in turn pushes labor-exporting countries to undercut each other.

The financial crisis that hit Asia recently had had serious impact on migrant workers. Massive capital and investments flight led to plant relocations and closures. Which in turn resulted to contraction of economies and labor markets. As local employment declined and unemployment increased, the five hardest hit countries in Asia went into major shift from formal to informal labor sector.[20] (transparencies)

The consequences for migrant workers were more severe and direct. Mass arrests and deport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ere carried out in Malaysia, Korea, Taiwan and Thailand. Documented workers suddenly found themselves without jobs and without means to return home. On the labor sending side, their governments encouraged their suddenly jobless migrant workers to remain because they are not prepared to absorb them. On the contrary, higher quotas for labor deployment was targeted by labor sending states.[21] Migrant workers, in a sense, are finding themselves in between borders, unwanted by both host and home countries.

September 11 and global economic slowdown

The biggest source of insecurity in today's world is the cause and effects of the September 11 tragedy. The consequences of which to the US and thanks to globalization, to every country that have relations with the US, economic and otherwise, are unsparing as they are intractable. Details of the economic slowdown and the impact o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ncluding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ll over continue to unfold before our eyes.

It brings home the point of migrant workers' vulnerability. Let me cite examples closer to

20 Gordon Betcherman and Rizwanul Islam, eds., East Asian Labor Markets and the Economic Crisis,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and International Labor Office, Geneva, February 2001, p.12

21 Asian Migrant Yearbook 1998, Asian Migrant Centre, Hong Kong, p17.

home: Today's newspaper reported that remittances this year is seen to drop by US$600 million, US$5.5 billion compared to last year's remittances of US$6.1 billion. In the words of the BSP (Central Bank) governor, We are living in uncertain times and some of our OFWs may have been hit by the recession. Some may have taken a wage cut while others may have lost their jobs.[22] Hard hit among migrants are those in the Middle East. Repatriation of workers, suspension of hiring, and job losses are causing anxiety among their families at home.

More stringent policies to restrict entry and reduce cost of foreign labor are being introduced by labor importing states. Another round of wage cut for foreign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and imposing importation quotas are under discussion. Taiwan has imposed a salary cut of NT$3,000 for food allowance. The net effect of policies in both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is the rising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who are largely unprotected.

V. Labor Security and Protection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employed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of their origin has always been a challenge to migrant workers and to states that are held liable for viola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Migrant workers are vulnerable in many ways. Separated from their homeland, faced with new ways of life and working conditions, and poorly prepared for the defense of their interests in oftentimes hostile environments, migrant workers more than any others are open to exploitation and oppressions, especially when their status has not been regularized.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standards of protection

Internationally,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is contained in various,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which are binding to states who ratify them. The United Nations has also promulga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is was pass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0. The most effective safeguards to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re those contained in legislations of nation states.

The normative instruments concerning migrant workers as far a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s concerned is Convention 97 adopted and revised in 1949. This is a 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It has been ratified by 39 states excludi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among other countries. The convention has

22 Philippine Daily Inquirer, December 5, 2001, p.B5.

various provisions aimed at regulat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migration of persons for employment shall take place and ensuring equality of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is also includes provisions for social, medical and banking services for migrant workers. The convention stipulates their right to join workers unions and to avail of legal remedies for criminal or civil suit.

ILO Convention 143 is a 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in abusive conditions and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It has been ratified by only 16 states.[23)]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as passed in 1990 and has been ratified by 17 states. Only three more states are needed before it comes into force.

The Convention reiterates the fundamental rights of migrant workers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ut it includes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possessing the same rights. It calls for humane working conditions. It condemns physical and sexual abuse of migrant workers. It prohibits cruel and degrading punishment, slavery, servitude or forced compulsory labor.

National legislation

National legislations on migrant workers are the most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The ILO has surveyed national laws covering 22 countries and approximately 800 legislative references have been identified and classified.

Issues and problems

There are now 19 ratifications to the UN Convention, but all of them are small and most

23 Other 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that make mention of migrant workers and migration:
a. Recommendation 86 adopted and revised in 1949 provides for the right to information among migrant workers;
b. Recommendation 100 adopted in 1975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erritories;
c. Recommendation 151 adopted in 1975 calls for migrant workers rights protection;
d. Convention 118 adopted in 1962 concerns the equality of treatment and social security of migrant workers. It has been ratified by 37 states;
e. Convention 157 adopted in 1982 concerns the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Only 2 states, Spain and Sweden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f. Recommendation 167 was adopted in 1983 and concerns the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are migrant sending countries. Not a single developed country who consider themselves civilized and guardians of human rights have ratified the 1990 UN Convention.

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on migrant workers have few ratifications. There had been revived interest in the ILO to bring these to the attention of governments and push for more ratifications. Recently Madagascar ratified ILO convention 143 after a seminar by ILO in that country. In fact, there is increased interest in ILO on the issue of migration and migrant workers. Having more personnel and projects on migration. There is an on-going project to develop a resource kit on migrant workers in exploitative forms of labor by the Gender Promotion Programme of ILO.

Another effort of ILO is to encourage sending countries to put to productive use migrant worker remittances which increased tremendously over the years, from less than US$2 billion in 1970 to US$73 billion per year. Some recommendation is to engage in business in remittance and earnings channeled to productive use and microfinance.[24)]

Despite the numerous conventions and UN standards emerging, there is a trend in further erosion of previous agreements and standards.

UN Conferenc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1978 in Geneva recommended that states ensure for migrant workers equality of treatment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including the right to retirement pension and similar social rights.

U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1994. The Platform of Action, chapter X on International Migration, recognized that international migration is linked to such interrelations and both affects and is affected by the development process. International economic imbalances, poverty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ombined with the absence of peace and securit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varying degrees of development of judicial and democratic institutions are all factors affecting international migration. It calls on governments of countries of origin and of countries of destination should seek to make the option of remaining in one's country viable for all people. To that end, efforts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nsuring a better economic balanc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rise of xenophobic and racist acts and regulations that target migrant workers and foreigners especially fearsome after September 11 underscore the vulnerabilities and lack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migrant workers. Blaming migrant workers for high incidence of

24 Making the Best of Globalisation: Migrant Worker Remittances and Micro-Finance, ILO Workshop Report, Geneva, 2000.

criminality as anti-social elements work against their security and protection.

The hostile attitude of trade unions and their lack of solidarity with migrant workers is an exercise of protectionism and run counter to workers internationalism. On the contrary local trade unions view migrant workers as competitors. Political parties, whose base are local labor unions are reluctant to support migrant workers rights. Organizing migrant workers into separate migrant unions apart from the local trade unions are at best a lip service to solidarity.

Trade unions of sending countries have shown indifference and are preoccupied with about their own jobs, their viability and existence in the face of economic slowdown.

At the core of labor security for migrant workers is the cost and other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and responsibilities which receiving states refuse to recognize and bea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other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emphasize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not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at the former are considered as realizable while the latter as costly and unsustainable.[25)]

Weakness within the ranks of migrant workers do not augur well for them. There has been no broad or strong organization and movement of migrant workers that demand for labor rights and security. Migrant organizations are basically at the level of self-help, mutual help associations.

Organizing of migrant workers is largely at the level of coping with work environment or religious in character. This could be because majority of them have not had previous experience in unionizing. Secondly, host country laws prohibit organizing much less unionization of migrant workers.

Except for unions of domestic workers in Hong Kong and community unions in Japan, there are no major migrant worker unions. These unions have weak bargaining power and works at individual level, single worker single employer basis.

VI. Conclusion

Migrant workers are the humanizing factor of the world. Migrant workers make pretensions of benevolence through humanitarian aid look hypocritical indeed. One cannot pretend to be concerned with the oppressed of the world when they are inside their homes and factories. They are like a mirror which a receiving country visits every morning to remind him that he is inhuman or human depending on how he treats the stranger in his midst.

25 Taran, Patrick, Human Rights of Migrants: Challenge of the New Decade; IOM/UN International Migration; Quarterly Review Vol. 38 No. 6, Special Issue 2/2000.

A great degree of the maturity of receiving states and their adhere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can be shown through the ratification of various ILO and UN conventions and in the promulgation of migrant labor laws applicable to the state.

In the final analysis, the security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labor security lies in their own home countries. It is there where the struggle for decent jobs, decent wages and security must be waged.

In the context of sending countries where jobs are being lost everyday due to globalization, job security may have to be in another form. Migrant workers may need to create the jobs themselves.

한국내 이주노동자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과 전망

이란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1. 한국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의 특성

한국에는 대체로 80년대 중·후반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초기 4-5년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때맞춰 스며들기 시작한 미등록 노동자들의 노동을 묵인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미등록노동자의 수가 많아지자 91년 미등록 노동자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94년부터는 도입규모를 2만명으로 대폭 늘려 아시아 11개국에서 연수생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수년에 걸쳐 점차 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하다가 현재는 8만명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또한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수는 정부의 출입국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 2001년 7월말 현재 약 26만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수 35만명의 74%에 이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한가지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통하여 저임금 단순기능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미등록 노동자의 숫자를 조절해가며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외노협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이 두 가지 전략을 모두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주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무시한 채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실제로는 연수가 아닌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면서도,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 수많은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연수생들이 겪고 있는 여권압류·감금노동·사업장내 폭행·저임금·임금체불 등은 연수생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는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그 노동력의 주체인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한국의 인력난을 해결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노동허가 없이 숨어 일하는 탓에 각종 문제 즉, 임금체불·산업재해·질병·부당해고 등에 시달리면서도 별다른 피해구제를 받지못하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도 고용주들의 외국인력 수요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중소제조업 분야만이 아니라 건설, 수산업 분야도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계속 이주노동자의 각종 권리를 빼앗은 채 노동력만을 요구한다면 이미 극에 달한 이주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이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시급히 외국인력도입정책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다.

2. 제도개혁운동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하고 있는 제도개혁운동을 크게 나누면 외국인력의 도입 및 관리, 인권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는 '법제도개선운동'과 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권리확보운동'이 있다.

1) 법제도개선운동

법제도개선 운동을 다시 '연수제도 철폐'운동과 그 대안인 '외국인노동자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서 밝힌대로 연수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도 불릴 만큼 이주노동자를 극심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이다.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에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개별 권리침해사안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95년 7월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제도개선 운동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96년과 97년에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원단체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96년말에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때 입법청원한 보호법안은 노동허가와 고용허가 병행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국내에 들어와 노동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노동허가를 해 주고, 국내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해 주어 외국인이주노동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법안에는 제도 시행과 함께 현재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하여 합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입법청원안은 국회에서 계속 잠자다가 1998년 국회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한국사회는 연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노동자와 같은 자격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사용자단체에서는 임금인상과 노조활동등을 우려하고 있고, 법무부·중기청 등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권과 각종 이권을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외노협과 지원단체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수정보완하여 2001년 12월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시 입법청원 하였다.

운동의 각 시기마다 정부는 다른 대응을 해 왔다. 초기 92-3년경에는 비판을 무시하고 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을 사용자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에 넘겨주었다. 95-7년경에는 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고용허가제를 거론하다가 연수생제도와 별로 다를바 없는 연수취업제로 변형시켰다. 2000년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겠다며 고용허가제를 내세웠으나 정부 부처간 대립과 중기협의 반발을 못 이겨 계속 연수취업제를 유지하고 있다.

2) 노동자성 인정 요구와 권리확보 운동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법제도개선운동과 더불어 이주노동자가 현행 제도하에서 최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 그

결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던 이주노동자들은 점차 한가지씩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 94년 -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인정
- 95년 - 연수생에게 산재보험 · 의료보험, 최저임금 · 폭행금지 등 근로기준법 8개조항 적용
- 97년 - 미등록노동자에게 퇴직금 지급 결정
- 98년 - 미등록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99년 -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에게 최저임금 · 폭행금지 등 적용
- 2000년- 연수생에게 퇴직금 지급 판결
- 2000년- 미등록노동자 가정의 어린이 초등학교 입학 허용

이처럼 외노협을 비롯한 지원단체들의 꾸준한 지원활동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연수생이 노동자냐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며, 미등록노동자는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강제퇴거 당할 우려가 크므로 노동부 · 경찰 등 정부조직에 도움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 모두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정한 고용관계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분적 권리확보를 이끌었던 모든 활동은 제도개혁 운동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망과 대안

2000년 노동부는 집권당인 민주당과 협의하여 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겠다는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 중기협과 법무부, 한나라당 등의 반대에 부딛쳐 중단되고 국회에 법안상정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표류하고 있는 안이지만 정부법안과 외노협법안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전망과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과 외노협이 2000년 입법청원한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외노협의 <외국인노동자고용및인권보장에관한법률>은 노동허가 · 고용허가제를 병행을 통하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을 최대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반면 정부의 <외국인근로자고용및관리에관한법률>은 고용허가제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물론 연수제도에서 문제되었던 송출비리 발생 소지를 줄이고, 공공직업안정기관이 운용하도록 하여 중기협과 같은 사용자단체의 이권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연수제도보다는 나은 내용이다. 그러나 외노협의 법안에 비한다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점이 많아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직접 노동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와 고용관계가 유지 될 때만 체류와 노동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지나치게 예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고용주가 마음대로 노동자의 체류와 노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노동자는 고용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그에 불응하거

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 · 노동권 보호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개선 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대로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물론 지금은 그마저도 물 건너가고 연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현실은 암담하다 하겠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십수년에 달하는 한국내 이주노동자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지원단체의 활동이 큰 성과를 얻어 왔던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간 제도개혁운동이든 부분적 권리확보 운동이든 주로 지원단체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전체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자주적인 운동이 미약했기 때문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 이주노동자의 74%가 미등록상태여서 신분이 노출되는 활동이 어렵고, 22%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연수생이어서 자주적인 운동을 하기는 무리라는 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결국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 조직화 또는 노조활동이 자유로와질때 까지는 지금과 같이 지원단체가 주도적으로 제도개혁운동을 이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에 더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를 서둘서야 합법화 이후의 운동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를 병행하며 이주노동자의 진정한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외국인노동자고용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처럼 꾸준한 운동을 통하여 한걸음씩 확보해 나가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Movement and perspective of improving migrant related system in Korea

Ran-Joo Yi

Buchon Migrant Workers House/ Secretariate

1. Characteristics of migrant related system in Korea

From mid 80s Korean society felt labor shortage. The government had not established any proper system in early 4-5 years while kept tacit consent to undocumented migrants.

'91 introduction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 System"

'94 expand the number of trainee up to 20,000 by introducing trainees from 11 Asian countries.

Current number of trainees is 800,000.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s has steadily increased. As the end of July 2001,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s is 260,000 and 74% of 350,000 total migrant population.

Korean government's two strategies to solve the labor shortage ;

1) utilizing the low wage manual worker through the trainee system

2) utiliz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by controlling the number

JCMK and other migrant support groups target the government's two strategies to be changed as the policy is only utilize the labor force but not protect their rights.

2. Movement for changing system

Migrant support groups' movement for changing system has been done in two areas - "migrant related law and system changes" and "promoting the migrants' rights"

(1) Movement for migrant related law and system changes

Movement for abolition of trainee system and legisla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Employmen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Bill". Since JCMK was established the members agreed to collectively fight against exploitative migrant system. So the common action was

defined as the system change movement. Therefore JCMK submitted the Migrant Workers Protection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late 1996. The bill combined the work permit to the migrant workers and employment permit to the employers who want to hire the migrant labor. The bill also includes amnesty to already existing undocumented migrants and legalizing them.

But the '96 bill has automatically expired alo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session ended in 1998. In December 2000 JCMK again submitted the bill mentioned above.

(2) Demand for recognition of migrant labor and partial legalization

Migrant support groups demand that the trainee and undocumented migrants should be recognized as workers while they demand the migrant system change. In result of such movement migrant workers' deprived rights have been recognized one by one.

- '94 - Applying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o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95 - Application of 8 articles of labor standard law includ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urance, minimum wage, ban on abuses etc. to trainees.
- '97 - Settle the case of undocumented migrant's retirement allowance.
- '98 - Application of labor standard law to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99 - Application of minimum wage, ban on abuses to joint venture trainees.
- '00 - Settle the case of trainee's retirement allowance.
- '00년 - Approval of undocumented migrants' children's admission to the primary school.

3. Perspective

In 2000, Ministry of Labor made a proposal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and management bill" in cooperation with ruling party to abolish the trainee system and to introduc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But the proposal did not eve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strong objection fr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SMBA),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KFSB), Ministry of Justice and opposit party.

The government's proposal and JCMK's bill in 2000 has big gab in protecting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JCMK's bill adopted the work permit system, so it gives more freedom to workers. The government's proposal is still lacking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and labor rights of migrant workers. But as of now the trainee system is still alive in Korea. Therefore migrant workers and support groups should be united and fight together. More strong movement for legislation of "Foreign Migrant Workers' Employmen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bill" should be done.

여성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

이 금연 세실리아

이주 · 여성 인권연대/ 안양 전 · 진 · 상 복지관장

I. 여성이주노동자 그리고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자리하여 수적으로 십만을 넘긴 1995년 이후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며 내국인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양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여성이주노동자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국제 이주기구(IOM)의 2000년도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력의 여성화(Feminization) 현상을 최근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 여성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1] 아시아 혹은 지구촌 전체의 노동력 이동의 여성화 현상이 이주노동인력의 유입.송출국인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여성으로서, 이주노동자로서, 불법체류자나 연수생으로서 다중적인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더구나 이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일터에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가별 혹은 출신 지역별 차별이 가중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물론 서비스 유흥 산업에 유입된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의 가장 주변 자리에 놓여져 있음을 최근의 조사나 상담사례들을 통하여 볼 수 있다.

2001년 5월 실시한 제조업 중심의 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2]에 따르면 여성들은 일단 임금에 있어서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동일한 노동을 하여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장시간의 노동과 휴일 근로 그리고 열악한 일터의 환경은 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낮은 임금과 높은 생활비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이주노동을 택한 이들을 빈곤층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직장 내 혹은 생활 공간에서의 성희롱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영어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여성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흥 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들의 실태 조사보고서[3]에 따르면 국내의 여성이주노동자 통계에 있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4] 이들은 연예인 비자로 입국하여 유흥업소에서 댄서로 일하면서 매

1)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여성이주노동자는 64,323명, 1999년도에는 75,297명 2000년도에는 98,487명에 이른다.

2) 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 조사를 2001년 4-5월 한 달간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실시하였다. 필리핀, 몽골,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등 5개국 출신의 이주여성 204명이 응답한 조사를 참고한다.

3) 2000년 11월 부산외국인 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이 조사한 '부산 지역 유흥 산업에 유입된 러시아 이주여성노동자 실태 조사보고서' 참고

4) 1999년 엔터테인먼트비자(E6)로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은 총 998명으로 이중 러시아 여성이 52.4%이며 필리핀 여성들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E6비자는 수익이 따

춘을 강요당하고 있다. 체류기간을 넘긴 채 일하고 있는 이들도 역시 단속의 위협과 강제추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또한 식당 종업원이나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려운 상태에 있으나 이들의 인권문제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지원 활동은 남.녀의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종교, 민간 단체들에 의하여 이어져 왔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여성주의적인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태조사가 약간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2001년 3월 말 '이주 · 여성 인권연대'가 창립되면서 국내에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네트워이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이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지원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현황

국적	중국	필리핀	인도네	베트남	태국	몽골	방글라	기타	합계
전문직	491	1,388	102	175	26	17		5,733	7,932
연수생	12,282	1,809	2,896	3,677	502	49	19	1,344	22,578
미등록	44,570	4,583	573	2,226	4,914	5,812	299	5,000	67,977
합계	57,343	7,780	3,571	6,078	5,442	5,878	318	12,077	98,487

(단위 명) 자료출처: 법무부, 「법무부 통계」, 2001년 2월 23일

(1)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사례1.

1997년 7월 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스리랑카 여성 안주 씨는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미등록상태가 되었고, 1년 먼저 와있던 남편과 함께 양말제조수출업체에서 2년 가까이 일했다. 그러나 1998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5개월분 340만원을 받지 못했고, 남편역시 마찬가지여서 500만원이 체불되었다. 부부가 공동으로 관할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는 없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았다면서 현재까지도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

사례2.

플라스틱 사출성형작업을 통해 스프레이 뚜껑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파키스탄 여성

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 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자)

데리사 씨는 안전장치가 고장난 사출기 사이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끼여 다친 손가락을 영원히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치료비만을 지급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최소한의 보상마저도 행하지 않았고, 다만 공상처리라고 하면서 4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에 합의하도록 강요할 뿐이었다. 한국어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데리사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

(2) 성희롱

사례3.

6년 동안 온갖 종류의 직종을 떠돌며 일을 해야 했던 한 몽골 여성은 잦은 일자리 이동이 성희롱으로 인한 것이었다. '예쁘다'는 말을 하면서 저녁을 같이 먹자며 퇴근후의 시간을 저당 잡으려 하는 한국인 남성 관리자들의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일만 하다보니 언어를 익히는 것도 어려워 졌다. 남성들은 수시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으려 한다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수시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곤 하였다. 한 두 번 웅한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 가면서 분위기의 이상함을 느낄 때마다 일자리를 옮겨야 했다.

사례4.

중국에서 온 한 여성은 지난 3년 동안 일자리를 13회 이상 이동을 하였다.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중국 연변에서 왔다는 사실이 '발칵'되면 그 순간 성희롱으로부터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었다.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심지어 얼굴에 손을 댄다거나 노골적으로 매춘을 요구해 오는 한국인 남성들의 접근을 피하여 그녀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의 이동이었다.

(3) 성폭행 및 폭행

사례5.

몽골 여성 M은 작은 공장이 밀집한 공단 지역에서 일하고 있을 때이다. 야간 작업을 하려던 중 인근 공장의 이주 노동자들 3명이 집단으로 이 여성을 강간하려 했다. 두남자가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었고 남은 한사람이 강간을 하려는 순간 또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자가 구출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이 택한 신체적인 안전은 남성과의 동거였다.

사례6.

중국 심양에서 온 김씨는 한식 식당에서 주방일을 도맡아 왔다. 식당에서 기거하면서 일하게 된 그녀는 용돈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주인이 계를 들어준다고 하여 믿고 따랐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계돈을 돌아오지 않아 돈을 달라고 할 때 마다 상습적인 성폭행을 하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내다 다시 돈을 달라고 하자 전치 몇주에 달하는 폭행을 당하여 쉼터로 피난을 와 임금을 재판을 통하여 받을 수 있었으나 폭행을 한 주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례7.

한 스리랑카 여성은 8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공장장에게 '월급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한다. 베트남 여자랑 둘이서 일했는데, 공장장은 기숙사에 들어와 앤을 발로 차고 머리를 심하게 때렸다. 20분간 쉬지 않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구타를 쉬지 않고 했다. 무서워 도망을 치기도 했으나

밀린 임금 때문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야 했다. 몇 차례 폭행을 당하면서도 임금 때문에 계속 일하였는데 경기가 회복되자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왜 공장장이 순간 순간 왜 그렇게 난폭하게 자신을 구타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례8.

스리랑카 여성 이샤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의 남성 노동자의 위협과 언어적인 폭행으로 늘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공장의 관리자에게 말하였으나 참으라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었다. 칼이나 주먹으로 위협해 오기도 하는 등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해야 했다.

(3) 의료 및 건강

결혼, 임신, 출산, 임신 중절 혹은 장시간 노동으로 온몸 통증과 자궁 질환을 주로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심리적인 증상인 우울 혹은 정서적인 장애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신체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III. 여성이주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이주·여성 인권 연대」는 기존의 19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이주노동자 지원을 해오고 있는 단체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특징이라면 개별 단체의 대표가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아직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의 접근은 부족한 상태이나 지난 3월 말 발족을 기점으로 하여 여성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모아지고 있다.

'구미 가톨릭 근로자 문화센터' , '부산 외국인 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과 '안양 전진상 복지관' 이 「이주·여성 인권 연대」의 주요 구성 단체이며 협력단체로는 서울 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기지촌의 성 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는 '새움터', 그리고 러시아 여성들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 단체를 들 수 있다.

(1) 상담

현재 지원 단체들의 내담 상담자 중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5-30%정도이다. 앞서 나열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 중심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미약하나마 심리상담을 시도하고 있다.

(2) 교육

많은 문제의 예방은 언어를 습득하면 해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교육은 늘 중요한 활동의 비중을 차지한다.

2001년도에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성교육 혹은 노동조합에 관련된 교육과 컴퓨터 혹은 건강과 취미 교실 강좌 등이 운영된 바 있다.

(3) Hot-line

여성들이 언제든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긴급한 도움이나 구호가 요청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로 운영되고 있다.

(4) 일시 쉼자리 운영

여성들은 직장내 성폭행이나 가정폭력 그리고 유흥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매춘을 강요당할 때 요구에 불응하여 탈출을 할 경우 긴급하게 피난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운영중에 있다.

(5) 국제연대

이주노동의 문제는 전지구적인 문제이다. 더구나 여성과 이주가 만나지는 이슈는 어느 때 보다도 비중 있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대는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지난 5월 '세계 인종차별 철폐 국제회의' 준비를 위한 일시적인 기구인 'NGO Net-Work for WCAR in South Korea'를 제안하여 국내 인권 단체들과 구성, 회의 준비를 함께 하였고 활동가들의 참가를 통한 국제 운동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 마련을 가졌다. 10월에는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언 전국 네트웍' 활동가들의 한국방문을 준비하여 연대를 다졌으며 그 외에도 全 일본 네트웍 총회에의 참가, 아시아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주관하는 세미나와 국제회의 참가등으로 국제연대를 다져가고 있다.

(6) 조사 연구 및 세미나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사 작업으로

'국내 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 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안양 전진상 복지관.2001)

'부산지역 유흥산업에 유입된 러시아 이주여성노동자 실태조사'(부산 인권모2000)이 있으며

'성매매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새움터와 공동 주관 하였고, '국내 이주여성 및 국제 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을 위한 자체 정책 웍샵을 열었다. 이밖에도 활동가들이 인권에 대한 접근의 시각을 명료화하기 위한 활동가 연수등을 실시 하면서 인권운동으로의 여성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캠페인 및 집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의 비준을 위한 캠페인은 개별 회원 단체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가졌다. 앞으로는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연대하여 비준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외에 국제 결혼한 가정의 일자리 안정과 체류신분상의 안정을 위한 방문과 집회 그리고 탄원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제 결혼가족의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Ⅳ.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실태조사 결과 내국인 노동자들보다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일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적도 2-3개 이상 되어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차별 받는 것'이라는 접근으로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는데 미흡할 것이다. 여성으로서, 이주민으로서, 국적이 다른 이로서, 나라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출신 지역과 종교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외모와 피부색, 문화적인 이질감, 나이와 직종에 의해 몇 중의 차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가족 부양을 위하여 기혼여성들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이국의 산업 현장이나 유흥 산업에 유입된 여성들, 점점 더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하여 이주노동을 택한 젊은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선 여성들은 문제에 여성주의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눈으로 산업 현장을 바라보고 여성의 시각으로 운동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군사문화가 곳곳에 스며있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여성주의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운동의 방향이 나와야 한다.

이론적 바탕의 마련과 함께 국제연대를 통한 지구적인 운동으로 여성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의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들을 매매의 수단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사설 알선 업자들의 횡포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이런 악덕 부로커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 법정이 열리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여성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본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힘있는 여성 연대 기구들이 만들어져 감시와 견제는 물론 이거니와 여성들의 자립자활이 국경을 넘지 않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국내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행 그리고 노동문제와 관련된 교육이 실시되어 여성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갖도록 하며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울 필요가 있겠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며 여성만을 위한 전문화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는 활동을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홍보해 내는 것은 가장 시급히 이루어질 일이다. 가장 주변부에 자리한 여성이주노동자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empowerment)의 노력이 그치지 말이야 할 것이다.

♣ 이주여성 인권침해 신고센타 및 연락처

서울·경기지역 :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금연관장

☎031-449-2876.443-2876 / 팩스 031-446-2876

e-mail kafi@kafi.or.kr

대구·경북지역 : 구미 근로자문화센타 모경순사무처장

☎054-455-2816 / 팩스 054-452-6929

e-mail kc2314@chollian.net

부산·경남지역 :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대표

☎051-802-3438 / 팩스 051-803-9630

e-mail noja@kornet.net

♣ 연락바랍니다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위의 각 지역별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Discrimination and the Problems facing Female Migrant Laborers in Korea :

The Role of Social Welfare Services

Kum-Yeon, Cecilia Lee

Human Rights Solidarity for Women & Migration

ABSTRACT

There are over 100,000 female foreign laborers working in Korea. These workers face double discrimination in Korea- they earn less because they are undocumented workers and they are also compensated less because they are women. These women all-too frequently suffer through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non-payment of wages, and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The currently available social services for these women run by NGO'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have been criticized as being unprofessional and less than thorough. While the number of such workers is on the rise, many rights violations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absence of a proper policy towards migrant laborers on the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emerging question is *who*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supplying social services to these women and *what* shape and form these services should assume. 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intention of helping those in the social work community identify and develop programs targeted towards women migrant workers in Korea. The researcher's task was two-fold: First, through field-work and surveys with these women we need to be aware of their particular experiences of suffering and discrimination. Secondly, we need to pinpoint those areas in which to provide services to help rectify the injustices against migrant female laborers.

The first part of the study involved actually interviewing and recording data using a quantitative survey method incorporating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 1-month period from mid-April to mid-May 2001 in the areas of Anyang, Ansan, Seoul, Suwon, and Gunpo where many female illegal migrant laborers are located. The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hailed from such diverse locales as the Philippines, Nepal, Sri Lanka, Mongolia, and Vietnam (with the only common thread between these places being that their respective per-capita incomes are only a fraction of those in Korea). 204 women completed the survey questionnaire and of these, 20 women were interviewed at our counselling center in Anyang. Our fieldwork revealed the following key results:

1. Women migrant laborers suffer from endemic discrimination at their work sites. While economically discriminated against in terms of lower salary, these women are also subject to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2. 72.6% of the female migrant workers surveyed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and as such, they have little if any legal recourse under laws of Korea.

3.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migrant laborers in Korea is widespread, especially in cases where skin color and physical featur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ns.

4. Most of the women contacted in the course of this study had difficulty communicating in Korean. This is certainly another factor that exacerbates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women.

After identifying these 4 main problems, we have highlighted 2 areas in which those of us in social services can improve the situation of illegal women migrant workers in Korea. First and foremost, the legal status of these undocumented workers in Korea needs to be resolved. We need to press those in government office to enact laws protecting migrant workers' rights as well as instituting a rational and honest work visa system more in line with the actual market demand for migrant labor. Also, undocumented workers should be given an amnesty and be allowed to work in the country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The government plays the key role in the efficacy and success of any social welfare framework for female migrant workers in our country. Secondly, those of us in social work need to help foreign women laborers become activ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its development. We also need to continue offering support services and counselling to those female migrant workers who are suffering from injustices and criminal behavior on the part of their employers. To this end, we need to offer mor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lasses in addition to education and services relating to labor and industrial law, gender discrimination laws, trade unions, and human rights.

Sometimes the little help that we can give is enough to motivate even the weakest members of our society to set themselves free from their enslavement. Even though it is a bit late, it is time for social workers to begin helping female migrant laborers through diverse programs and services in order to right the injustices currently befalling these women.

외국인노동자 의료서비스 지원 현황 및 향상을 위한 제언

구정희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기획관리팀장

1.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실태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생소한 한국의 문화와 기후, 식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일하면서 겪는 심한 스트레스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그 누구보다도 질병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단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가 의료 혜택을 누리기란 쉽지 않다. 맹장염이 복막염이 되고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되는 등 고칠 수 있는 병을 방치해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외국인 노동자 또한 속수무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행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다. 한국어로 자신의 질병 상태를 표현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병이 발생하여 병원을 가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해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 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심지어는 비싼 비용을 들여 검사를 받고 나서도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떠한 처치를 받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로는 공장을 결근할 경우 많은 액수의 수당이 공제되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병원이용을 허락하치 않는 고용주의 태도 등이 외국인 노동자의 병원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높은 의료비용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병원비를 책임질 한국인의 보증인이나 높은 입원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생명을 담보로 건 모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국내의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의 진료비가 부과되어 며칠만 입원해도 병원비가 2-3백만원이 넘어 도중에 치료를 포기한 채 퇴원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어서 의료 서비스는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병원을 찾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극대화된다.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질병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2.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활동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신분적 제한 때문에 현행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의료보험을 적용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 부담액은 약 6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병원비는 전적으로

환자 본인 부담으로 남겨지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소에서 병원비를 감면해달라고 병원을 설득하거나 모금운동을 하거나 언론에 호소하여 후원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다행히 한국 이주 노동자 유입의 역사가 10년이 넘은 만큼 이들이 비록 불법 신분이라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조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단체는 응급환자, 산업재해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타와 폭행 등 심각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자로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 주로 의료진의 자원봉사와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무료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수가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상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어렵고 진료에 소요되는 자원공급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가 결성되었으나 심각한 중병이나 대규모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환자와 제대로 된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일, 경제적인 비용부담의 문제, 장기적인 회복기간 동안 간병문제 등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3. 변화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의료 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주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게되면서 이들의 의료수요 양상도 최근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령분포상 젊은층들이 많아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의 이용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이나 산전 관리를 위한 산부인과 의원의 이용이나 신생아 예방접종이나 각종 소아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아과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악화되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로 3D업종에서 일하는 탓에 불량한 작업환경 및 근무조건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직업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

국가별 민족별로 각기 다른 문화와 관행, 의식구조를 갖고 이질적으로 한국사회에 섞여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란 신분은 이들에게 항시 존재에 대한 불안을 초래한다. 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환자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면 병을 키우다 자살하거나 알콜중독 환자가 되는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들 증상은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거나 입원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존재하는 환자군으로 형성되며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4.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현실 개선 방안

해를 거듭하면서 단지 응급구호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수요가 보편화되었다. 이제 일부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를 결성하여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비단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민간차원의 의료지원 활동에 대한 제안으로는. 첫째, 외국인 노동자 지원 상담소에서 처리하는 대부분의 응급상황은 질병 발생의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질병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병을 키운 경우이다. 지금처럼 신분적인 제약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공식적인 의료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제대로 된 관리는 고사하고 질병의 진행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훨씬 돈이 더 많이 드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게되고 개인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질병 예방교육과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무료진료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단체들간의 정보교류와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의 장이 요구된다. 각 참여 주체들의 현황 즉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현황 및 무료진료시 개선점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째, 외국인노동자들이 살거나 일하는 지역내의 상담소, 의료기관 간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이나 거주이동이 잦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특성상 무료진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지역내, 지역간 및 전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의료지원단체들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식적 부문의 미흡함을 보완해 주고 인권과 의료의 사각지대를 포괄해주는 완충지대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문제는 자발적으로 민간조직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무료 진료하는 의료진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들의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운동의 활성화는 충분히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전체적인 의료수요에 대한 파악,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관할하는 총괄적인 조직과 운영원칙이 필요하다. 이는 단지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공급되는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조직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정부의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조직적 임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는 책임있는 정책 및 제도개선의 의지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실행함과 동시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유기적인 관계정립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나라의 보건학적인 문제는 우리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도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AIDS 와 결핵, 간염 같은 법정전염병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적인 방역체계의 중요한 문제이다. 산업연수생들의 입국 시 건강검진으로 이러한 질병들이 선별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는 이러한 과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존재가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과반수가 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가관리 질병에 대한 방역체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불법 체류 인력의 공식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인력의 관리와 보건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노동환경개선이라는 차원의 또 다른 이슈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처우개선책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운동의 배경과 의의

김미선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사무국장

1. 이주노동자 협약이란?

최근 몇년간 외노협이 주최하는 집회나 시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이하 협약)" 비준운동은 국내에서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캠페인이다.

협약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로운 국제인권조약으로 현존하는 모든 국제 인권법 및 ILO 이주노동자 조약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기존의 ILO 조약과 다른 점은 합법, 불법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협약은 국제적 효력발생을 위한 최소 20개국의 비준국 수를 정해놓았으나 2001년 11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17개국만이 비준한 미발효 조약이다.

1) 협약의 의의

협약은 대부분의 나라가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해주며, 국제 인권조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가. 이주민 권리보호의 기초 마련

이주민 권리보호의 전체적인 기초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 기초는 오늘날 경제통합 과정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보장한다.

나.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국제적 개념 확립

최초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이주노동자 범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밝혔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의 특정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세워 취약한 지위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도모한다.

다. 기본 인권개념의 확장

인권 개념을 등록노동자는 물론 미등록 노동자에게까지 확장시켰다.

라. 불법 이주와 착취방지 역할